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979

발의연월일: 2020. 8. 14.

발 의 자:김예지·이주환·박덕흠

류성걸・이종성・추경호

이 용・김희국・최승재

강기윤 · 김승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 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 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 로 변환하고 복제·배포·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자막으로 변환 가능한 대상이 음성 및 음향 등에 한정되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영상도서나 수어영상을 만들 때 동화나 소 설 등의 어문저작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각색을 해서 사 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.

이에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뿐만 아니라 저작물등 전체를 자막 등으로 변환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저작물등의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. 또한 현행법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는 저작물이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에 한정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자구 수정을 통하여 해석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고자 함(안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제1항 중 "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"를 "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청각장애인이"를 "저작물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의2(청각장애인 등을 위한	제33조의2(청각장애인 등을 위한
복제 등) ① 누구든지 <u>청각장</u>	복제 등) ① <u>공표된</u>
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	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
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	<u>여 한국수어로</u>
고,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・	
배포・공연 또는 공중송신할	
수 있다.	
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	2
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(해당	
시설의 장을 포함한다)은 영리	
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	
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	
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	
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	저작물등을 자막 등 청각
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	<u> 장애인 등이</u>
<u>애인이</u>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	
로 변환할 수 있고, 이러한 자	
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	
할 수 있도록 복제・배포・공	
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